

# 인 천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5가단2284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 서대문구  
송달장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표자 이사 김○○  
피 고 최○○  
인천 중구 도산로  
소송대리인 김●●  
변 론 종 결 2016. 6. 16.  
판 결 선 고 2016. 7. 14.

## 주 문

1. 소외 김●●(67-1)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8. 3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8,28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8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에 대하여 별지 구상금 기재와 같은 금전채권을 가진다(피보전채권).

나. 김●●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던 중 자신의 아버지인 김○○이 2014. 8. 30.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 형제들인 김◇◇, 김◆◆와 공동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김●● 자신의 상속 지분 2/9를 포기한 셈이다.

다. 위 분할협의를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4. 10. 30.자 접수 제4673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2014. 11. 10. 채권최고액 3,24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용진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1. 6.경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82,278,000원이다.

##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는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 중 2/9지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데도 이를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김●●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김●●와 수익자인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추정되는 법리이고, 알지 못하였다면서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각 부동산을 자기 돈으로 매입한 소유자이고 남편인 망 김○○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김●●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김●●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면서 선의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3.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 가. 법리

채권자취소 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가액에 상응한 금전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물반환 이행의 실현을 기

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① 위 제한이 그대로 있어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면 ②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원칙은 원물반환인 점, 가액배상은 예외이므로 원물반환이 가능함에도 가액배상을 청구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채권자는 전득자를 소송 상대방으로 삼지 않겠다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수익자의 자력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향유하려는 가액배상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나쳐서 자칫 사안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07조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상 우선변제를 당연시할 수는 없고 합리적 제한이 필요한 점, 원물반환 청구 속에는 가액배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물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액배상 판결을 하더라도 처분권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과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에서 나열된 2가지 방법 즉, 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② '가액배상' 사이에는 위와 같은 선후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에서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위 저당권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저감된 상태에서 평가한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목적물의 가치가, 사해행위 당시의 그러한 제한이 없는 때의 가치보다 상당한 정도로 작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①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면 ②의 방법이 허용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인데, 언제나 그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인 용진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함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고 수익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행사하고 있으며, "피고가 용진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라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 그 또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방법이 남는다.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한다. 용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변론종결일 무렵의 부동산 가액 대비 상당한 액수에 이르러 잔여 담보가치가 적고, 부동산 시가가 지난 21개월 사이에 크게 상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 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충분한 원상회복은 곤란하다. 또한, 취소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전득자 용진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다른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건의 인천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18763 판결이 가액배상을 이미 명하였으니, 본 사건에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원물반환을 명하면 피고에게 가혹한 이중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사

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을 받아들인다.

가액배상의 범위는, 각 부동산의 시가인 82,278,000원 중 김●●의 상속지분인 2/9에 해당하는 18,284,000원이다.

따라서 김●●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18,28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8,28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18763 판결이 명한 가액배상 의무와 별도로 피고가 이중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덧붙여둔다.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써 이중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 구상금

###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의 2011. 4. 26.자 자산매매계약 체결에 의하여 채권매도인인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본 계약에 따른 채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일체를 양수받은 자이며,

나. 소외 김●●는 피고의 자(子)로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와의 신용카드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명시된 각 조항을 확약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 지정한 결제일자에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자로 신용카드계약은 개인 신용카드의 발급 및 카드서비스(현금서비스, 카드론거래 포함), 리볼빙결제등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소외 김●●는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본 약정은 해지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소외 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2011차전15112)을 신청하였으며, 결정되었습니다.

### 나. 지급명령결정문

원고는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무자 김●●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

2011. 6. 23. 결정, 2011. 6. 28. 송달, 2011. 7. 13. 확정되었으며, 그 결정 내용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21,663,285원 및 그중 금5,744,350원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입니다. 이에 위 지급명령결정문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는 원고에게 2016. 6. 7. 현재기준 미수원금 금5,744,350원, 미수이자 금15,918,935원, 지연이자 금7,147,242원<sup>1)</sup>, 합계 금28,810,5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다. 채권의 양도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은 2003. 5. 15.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에스엠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2007. 5. 7. 채권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2011. 4. 26. 자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양수되었으며, 소외 김●●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

1) 2011. 6. 18.부터 2016. 6. 7.까지 미수원금 금 7,147,242원의 25%지연이자